

## 일본국 헌법 시행 60 주년을 맞이하여 민과법률부회 성명

200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은 오늘 시행 60 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헌법을 제정에 앞서 1946년 1월에 민주주의 과학자협회 법률부회 (약칭:민과법률부회)의 모체인 민주주의 과학자협회가 «민주주의 일본의 성장과 확립»을 기하여 «일본인민의 복지 및 세계 평화»(동 협회 규약 제2조)에 과학자로서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민과법률부는 60년에 걸친 역사를 함께 걸어온 일본국 헌법이 국내외에서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오늘에 그 적극적인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계속 이것을 견지하여 더욱 발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임을 호소하면서 이 소견을 여기에 표명한다.

1 일본국 헌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와 일본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참화를 가져온 침략전쟁을 반성하여 항구평화,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보장, 의회제 민주주의, 지방자치 등 인류의 다년에 걸친 노력의 성과를 담아서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전쟁, 무력행사 영구포기와 전력 불보지를 명기한 제 9 조와, 개인존중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시민적 자유를 비롯하여 형사적 권리의 극진한 보장, 남녀 평등이나 생존권도 담겨진 풍부한 인권보장 규정은 세계사적으로도 획기적인 것이다.

이 헌법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의 원자폭탄 피해를 비롯한 비참한 전쟁을 체험한 국민의 평화를 회구하는 소리, 일본의 침략에 의한 가혹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민들의 소리에 의해 지탄되고 또 이 헌법의 평화적 민주적 제원리가 위협받았을 때마다 이것을 물리치는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의 근거로서 그 역할을 60년 동안 계속 다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헌법, 특히 제 9 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날마다 강해지고 있다. PKO 등 협력법이나 주변 사태법에서 시작된 자위대 해외 파병체제 준비는 테러 특별조치법, 이라크 특조법, 무력공격 사태법 등으로 더욱 강화되고 특히 미군과의 공동작전 체제 완성이 기도되고 있다. 일전에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게 하였고 그 권한을 강화하며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본래임무로 하는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 개정도 실시되었다. 벌써 자민당은 2005년 11월에 자위대 보지와 그 국제적 활동을 명기한 신 헌법초안을 발표하여 민주당은 동년 10월에 UN 다국적군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헌법제언을 작성한 바 있고 일본경단련도 «국익 확보»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한 자위대 해외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 경제권에서 명문 개헌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는 속에서 헌법개정 수속법이 제정되고 있다.

2 이러한 헌법 개정의 움직임은 모든 법분야에 걸친 국가, 사회의 기본구조 (constitution)의 전환, 개조와 연동되어 있다. 민과법률부회는 이런 움직임의 전체구조의 검토가 이 학회 고유임무라는 자각에 입각하여 그 동안 1. 소선거구제, 정당조성 도입 같은 일련의 정치 «개혁», 2. 경제, 노동, 복지 등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3. 행정, 사법, 교육, 대학 등 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4. 국기 국가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 등 국가주의적 «개혁», 5. 도청법 제정과 소년법 개정, 정치적 표현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공모죄 신설구상 등 치안체제 강화, 6. UN 헌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질서에 배반하는 일미군사동맹 체제 강화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잇달아 국가구조 «전환, 개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노력해 왔다. 그 구멍의 결과에 이 «개혁»들은 일본국 헌법의 제원리에 대조하면 그 정당성, 타당성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민과법률부회는 지금까지 일본국 헌법의 평화적, 민주적 원리들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특별 연구조직을 결성하며 이것을 막기 위한 학문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본회는 헌법시행 6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헌법개정의 움직임을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연구자 집단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법학 연구자의 연구상 연락, 협력을 촉진시켜서 민주주의 법학의 발전을 꾀하는»(민과법률부회 규약 제2조) 입장을 견지하면서 세계와 일본의 사람들과 손을 잡으며 일본국 헌법의 제원칙 옹호와 발전을 기하여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기여를 이루어 갈 것을 여기에 표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과학자협회 법률부회